

삼척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(안) 승인 내용

1 관리계획 개요

- 계획의 목적
 - 환경부장관이 기 수립한 “물 재이용 기본계획(2011~2020)”에 따라 삼척시에서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·시행
 - ※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계획 수립주체 : 삼척시장(승인권자 : 원주지방환경청장)
- 계획의 범위 : 2012년 ~ 2020년/삼척시 행정구역 전체(1,186.11km²)
- 주요내용 : 빗물 재이용 및 중수도, 하수처리수 재이용, 교육·홍보 등

2 물 수급 전망

- 삼척시 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(2010)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삼척시의 시설용량은 58,500m³/일이며, 하루 최대 계획 용수수요량은 40,805 m³/일이므로 물 부족량은 없을 것으로 전망

(단위 : m³/일)

구 분	현재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목표연도	2012년	2014년	2016년	2018년	2020년
일 최대수요량	40,084	40,084	39,654	39,654	40,805
공급량	53,500	53,500	58,500	58,500	58,500
과부족량	(+)13,416	(+)13,416	(+)18,846	(+)18,846	(+)17,695

3 물 재이용 목표량

- 2020년 물 재이용량 목표량은 5,424.5천m³/년으로, 2012년 722.0천m³/년 대비 약 6.5배 증가예상(※ 2020년 물 수요량 대비 36.4% 규모)

〈목표 연도별 물 재이용 목표량〉

(단위 : 천m³/년)

구 분		현 재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목표연도		2012년	2014년	2016년	2018년	2020년
총 목표량		722.0	724.8	1,142.8	1,154.0	5,424.5
빗물 재이용		-	2.8	40.3	51.5	51.5
중수도		-	-	380.5	380.5	380.5
하수 처리수	소계	722.0	722.0	722.0	722.0	4,992.5
	장내용수	710.0	710.0	710.0	710.0	710.0
	장외용수	12.0	12.0	12.0	12.0	4,282.5

※ 장외용수는 레미콘, 공사현장, 공업용수를 포함

4 물 재이용사업 세부 추진계획

- (빗물 재이용) 설치의무 대상은 없으며, 재정여건,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빗물이용시설 확대 추진
 - 2020년까지 삼척시청, 실내체육관(2개소), 학교(4개소), 종합발전단지에 총 3,728m³의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51.5천m³/년 재이용
- (중수도) 2016년 종합발전단지에 1,570m³/일의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380.5천m³/년 재이용
- (하수처리수 재이용) 2012년 현재 삼척,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수 일부를 장내용수(710.0천m³/년)와 장외용수(12.0천m³/년)로 이용하고 있으며, 2020년 재이용 목표량은 4,992.5천m³/년으로 설정

- 장내용수로의 재이용 이외에, 2020년에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(주)동양시멘트에 공업용수 4,270.5천m³/년을 공급예정(이송관로 250m, 공장공업용수 2,628.0천m³/년, 화력발전소용 1,642.5m³/년)
- (교육 및 홍보)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물 재이용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·홍보활동 전개
 - 빗물이용시설 현장교육, 초·중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,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계획 수립·시행
 - 시민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개발,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이벤트 개최, 세계 물의 날 행사, 언론·인쇄·대중교통매체 홍보, 홍보 영상물 제작 등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

5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현재 (2012)	1단계 (2014)	2단계 (2016)	3단계 (2018)	4단계 (2020)
합계	계	701	-	127	92	294	188
	국고	305	-	74	42	190	-
	지방비	231	-	54	50	104	23
	민간투자	165	-	-	-	-	165
빗물이용 시설	소계	436	-	105	60	271	-
	국고	305	-	74	42	190	-
	지방비	131	-	32	18	81	-
	민간투자	-	-	-	-	-	-
하수처리수 재이용	소계	165	-	-	-	-	165
	국고	-	-	-	-	-	-
	지방비	-	-	-	-	-	-
	민간투자	165	-	-	-	-	165
교육·홍보	소계	100	-	22	32	23	23
	지방비	100	-	22	32	23	23

⑥ 승인조건

- 2020년까지 삼척시의 물 재이용 목표량(5,424.5천m³/년)을 달성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
- 물 재이용 의무·권고시설, 재정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「삼척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조속히 제정·시행하여야 함
- 물 재이용사업 관련하여 국가하천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, 하천수 사용 관련사항은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할홍수통제소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
- 동 관리계획 내용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
 -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기간의 변경(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)
 -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, 필요시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 끝.